

**부속서 10-나**  
**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**

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해를 확인한다.

가. 이 협정문 제10.18조제2항라호에서 언급된 조치는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및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치이다. 그 조치는 비차별을 기초로 부과되어야 하고 다음의 자국 법 또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.

- 1) 대한민국의 경우에는,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서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.
- 2) 인도의 경우에는, 제10장제18조제2항라호에서 언급된 적용 가능한 조치는 *외국환관리법(FEMA)*에 따라 형성된 규정에 본질적으로 명시되어 있다.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는 해당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나. 당사국이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가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주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, 그러한 조치에 대상인 외국기업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.